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재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281

발의연월일 : 2023. 3. 27.

발의의원 : 최재규 의원, 김은영 의원, 곽동환 의원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,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감면받는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주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(안 제2조의2)

나.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거나 납기 연장할 수 있는 사항 규정 (안 제14조제1항)

다.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상에 관해 규정(안 제14조제2항)

3. 개정 조례안 : "붙임"

4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　　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건소”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·관리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
2. “보건지소”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소로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
3. “보건진료소”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(이하 “농어촌의료법”이라 한다)」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군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
4. “보건소 등”이란 보건소,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.
5. “진료비”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보건소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지휘·

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,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
제4조제3항 본문 중 "의사면허소지자중에서"를 "의사면허소지자 중에서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경우에는 「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」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"를 "경우에는 「농어촌의료법」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"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"10원미만"을 "10원 미만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1.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
3.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
4.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의 검사 및 진료
5. 국가,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

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"를 "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1. 65세 이상인 사람

3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

4. 관내 학교장 또는 읍·면장이 본인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19세 이하인 사람

5. 관내 13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부모,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

6.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

별표 3 제2호 골밀도 검사의 1회 금액 5,000 비고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65세 이상인 사람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**제2조의2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보건소”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·관리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 2. “보건지소”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소로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 3. “보건진료소”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(이하 “농어촌의료법”이라 한다)」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군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 4. “보건소 등”이란 보건소,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.

	5. “진료비”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.
제4조(소장 및 지소장) ①보건소장은 군수의 지휘·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, 관할 보건지소와 「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.	**제4조(소장 및 지소장)** ①보건소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지휘·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,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 다만,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「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」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	③---------- 의사면허소지자중에서 ---------- 경우에는 「농어촌의료법」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----------
제9조(약가)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동약가 기준액표에	**제9조(약가)** ---------- ---------- 10원 미만---------- . ---------- ----------

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 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
제14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.	**제14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**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. 1.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발생 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.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.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. 국가,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

	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
②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.	②----------.
1. 만 65세 이상인 자	1. 65세 이상인 사람
2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가진 사람	2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----------
<신 설>	3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
<신 설>	4. 관내 학교장 또는 읍·면장이 본인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19세 이하인 사람
<신 설>	5. 관내 13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부모,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
<신 설>	6.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